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활동 방해행위 가중처벌 조항 신설〉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41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 6.
3. 회 부 일 :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구조 받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임.

이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에서 소방대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소방활동 방해행위 관련 가중처벌조항 신설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 소방대원을 ①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③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벌칙) (생략) <u><신설></u>	제50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제1호다목의 죄를 범하여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소방대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 장비파손 등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 방해죄 관련 조문>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이하 이 조에서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한편, 최근 5년간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 방해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상해)이 매년 200건 이상 발생 하면서 전체 소방활동 방해행위 중 89.1%(전체 1,228건 중 1,094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¹⁾.

<최근 5년간 소방활동 방해행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발생건수	유 형 별				
		폭행/상해	성희롱(추행)	기물파손	진로방해	기타
계	1,228 (100.0)	1,094 (89.1)	16 (1.3)	32 (2.6)	13 (1.1)	73 (5.9)
2024년(상반기)	154	132	1	3	0	18
2023년	254	222	9	7	3	13
2022년	317	288	3	9	3	14
2021년	259	232	1	10	4	12
2020년	244	220	2	3	3	16

(자료 : 소방청)

개정안은 소방활동 방해행위 중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소방대원을 상해,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²⁾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방대원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원활한 직무

1)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주로 119 구급대원에게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2019년~2023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 총 1,178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 피해가 1,002건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힘.

* 119 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의 상세 내용은 [참고] 참조

2)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수행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 죄질 및 보호 법익, 범죄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이므로³⁾,

개정안의 입법 여부는 공무원의 다른 공무집행 활동⁴⁾에 대비한 소방활동의 중요성의 정도, 유사입법례, 다른 법률에 따른 중상해죄, 상해치사상죄의 요건 및 법정형 등을 참조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 할 사항으로 보임.

개정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 소방대원을 ①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③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사입법례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60조제1항)에서 응급

3) 현재 1999. 5. 27. 98헌바26 전원재판부

4)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의 법정형이 개정안에 따른 법정형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⁵⁾.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내용 비교>

구성요건		법정형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u>폭행</u> 또는 <u>협박</u> 을 행사하여 화 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 급활동을 방해하여 소방대 원을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 급의료 종사자를 <u>폭행</u> 하여	
-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다만, 가중처벌이 가능한 행위와 관련해서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차이가 있는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뿐만 아니라 ‘협박’을 행사한 경우에도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1. 15.>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과 달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치상죄 및 중치상죄와 관련한 개정안과 다른 법률의 규정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치상죄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권한사항인 한 그 종류와 성질에 제한이 없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⁶⁾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적용되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의 치상죄는 그 요건이 소방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협박으로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되기는 하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6)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강제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작용일 필요가 없고, 단순한 내부사무라도 공법적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한 본죄의 직무집행에 포함됨. 대법원은 야간 당직 근무 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건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음(대판 2008도9919).

<치상죄에 대한 법정형>

구 분	구성요건	법정형
개정안 (소방대원 치상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형법」 상 공무집행 방해죄 §136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u>폭행 또는 협박</u> 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상 특수공무방해 치상죄 §14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년 이상 유기징역

다음으로, 개정안에 따른 중치상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있는데,

「군형법」의 경우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중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법정형이 적전(敵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군형법 제60조의4), ‘상관’을 폭행·협박하여 상관을 중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법정형이 적전(敵戰)·전시·사변·계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군형법 제52조의5).

<중치상죄에 대한 법정형>

구 분	구성요건	법정형	
		구 분	법정형
개정안 (소방대원 중치상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소방대원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형법」상 중상해죄· 중치상죄 §258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		1년 이상 10년 이 하의 징역
「군형법」상 상관중상해· 중치상 §52의5	상관폭행·협박죄, 상관 집단 폭행· 협박죄, 상관상해죄, 상관집단상해죄, 상관특수상해죄를 범하여, 상관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상관집단상 해의 수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기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군형법」상 초병 중상해· 중치상 §58의5)	초병폭행·협박죄, 초병집단폭행·협박죄, 초병특수폭행·협박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군형법」상 직무 수행 군인등 중상해· 중치상 §60의4	직무수행군인등폭행·협박죄, 직무수행군인등집단특수폭행·협박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협박죄, 직무수행군인등상해죄, 직무수행군 인등집단상해죄, 직무수행군인등특 수상해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사람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그 밖의 경우	2년 이상 유기징역

또한, 개정안의 벌칙 중 치사죄의 법정형은 현행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에 부과되는 법정형과 동일한데⁷⁾,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가해자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한정해서 가중처벌하고 있음.

<치사죄에 대한 법정형>

구 분	구성요건	법정형
개정안 (소방대원 치사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소방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형법」상 특수공무방 해치사죄 §144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대원의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⁸⁾에

7)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8) 소방청은 그 동안 폭행/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이 1명 있다고 설명함.

- 사고일자: '18. 4. 2.

- 사망원인: 뇌동맥류 파열 및 이후 발생한 합병증(광주과학수사연구소)

* 2018년 4월 주취자를 119구급차량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욕설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병

- 순직일자: '18. 5. 1.

- 사후조치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소방대원의 심신 보호를 강화하고 원활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힘.

또한, 소방청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해 행위 중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소방활동 방해 행위 중 가장 빈도가 높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폭행”이고, 현장에서 극심한 위협과 협박을 받아 소방대원이 심리적 충격·공황 등으로 인해 실신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협박으로 위험한 상황에 몰리게 되어 2차 사고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협박” 또한 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⁹⁾.

법무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규정의 도입 여부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 일반순직 신청('18. 8. 10.) → 가결('18. 8. 30.)
· 위험직무순직 신청('18. 10. 23.)→부결('19. 2. 13.)→재심청구('19. 3. 4.)→ 위험직무순직 승인('19. 4. 29.)
·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승인('19. 5. 23.)
9) 소방청은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는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만, 협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함.

참고 1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대책

(자료: 소방청)

□ 추진개요

- (추진배경) 다양한 대책 추진에도 구급대원 폭행 피해 지속 발생
 - 최근 5년간 폭행피해 총 1,178건 발생(주취자 1,002건 / 80.3% 차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203	196	248	287	245
전년대비(%)	△5.6	△3.4	26.5	15.7	△15
주취자	183건 (90.1%)	168건 (85.7%)	203건 (81.8%)	245건 (85.4%)	205건 (83.7%)

※ 2023년 폭행건수는 감소하였지만, 건수대비 주취자에 의한 폭행건수는 작년대비 비슷한 추이를 보임

* '21년 168건/248건(67.7%) → '22년 245건/287건(85.4% ↑) → '23년 203건/244건(83.7% ↓)

- (추진목표)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구급대원의 현장 활동 보장

□ 중점 추진사항

- (운영체계) 폭행 사고 단계별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운영
- ❖ 상황대응* ⇨ 구급현장대응 ⇨ 전담팀대응 ⇨ 대원보호 ⇨ 사후관리·개선
 - 정확한정보수집, 전파 ⇨ 정확한 판단, 신속한 결정 ⇨ 사법조치, 언론활용 ⇨ 심리지원, 비용지원 등 ⇨ 조치, 제도, 미비사항 보완
- * 상습주취자, 폭행이 예상되는 신고는 접수 시점부터 다중 출동 등 선제적 상황 대응
- (안전교육) 구급대원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외부강의 등) 활성화
- (중점홍보) 주취자 등에 의한 폭행예방 언론매체 노출 등 대국민 홍보
- (장비보급) 폭행 상황 대비 구급차 경고·신고 장치, 구급대원 안전모, 웨어러블 캠 등 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
- (보호강화) 폭행범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경찰 공동대응 협력 의무
- (피해지원) 휴식시간 보장, 심리 치유·치료 지원, 폭행피해 대응전담팀 설치·확대 등 모든 가용수단 지원으로 피해 구급대원의 회복 내실화

□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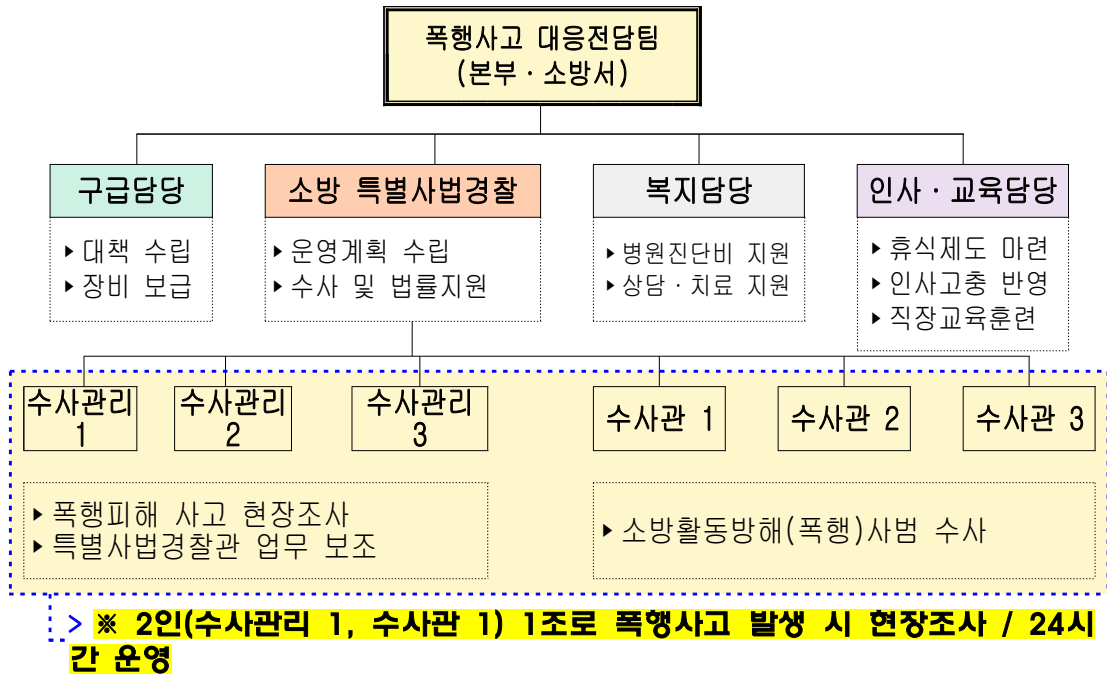
-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시·도 배포 예정(하반기)
-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한 소방본부별 자체 대책 수립·추진(연중)

참고 2

구급대원 폭행 피해 대응체계 표준모델(안)

※ 표준모델(안) 참고, 시·도 소방본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운영

폭행사고 대응전담팀 운영체계(안)



폭행사고 처리절차(안)

